

# 원주역 우미 린 더스카이 | 일반공급 안내문

## ■ 일반공급(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앱을 통한 인터넷 청약)

### ■ 신청자격

1	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	2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3	입주자 저축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	--------------	---	-------------------------	---	----------------------

###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가점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m<sup>2</sup>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청약 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ul>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li> </ul>
청약통장 기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li> <li>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li> <li>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li> <li>④ 청약 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환한 분 신청 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li> </ul>

### ■ 가점제 적용기준

※ 2년 내 가점제 당첨 사실이 있을 경우 가점제 청약 불가 / 추첨제로 청약 가능

구분	내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li> <li>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한다.</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무주택 산정기간</th></tr> </thead> <tbody> <tr> <td>주택소유 경험 없음</td><td>만 30세 이전 혼인 만 30세 후 혼인</td></tr> <tr> <td>주택소유 경험 있음</td><td>만 30세 이전 혼인 만 30세 후 혼인</td></tr> </tbody> </table>			구분	무주택 산정기간	주택소유 경험 없음	만 30세 이전 혼인 만 30세 후 혼인	주택소유 경험 있음	만 30세 이전 혼인 만 30세 후 혼인					
구분	무주택 산정기간													
주택소유 경험 없음	만 30세 이전 혼인 만 30세 후 혼인													
주택소유 경험 있음	만 30세 이전 혼인 만 30세 후 혼인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기준</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배우자</td><td>부양가족 인정</td><td>법정 배우자만 인정</td></tr> <tr> <td>미혼자녀</td><td>만 30세 미만 만 30세 후</td><td>모집공고일 현재 등재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등재 미혼으로 한정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td></tr> <tr> <td>직계존속</td><td>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td><td>청약자의 세대주 자격 필수 (분리세대 시 청약자와 배우자 모두 세대주)</td></tr> </tbody> </table>			구분	기준	비고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	법정 배우자만 인정	미혼자녀	만 30세 미만 만 30세 후	모집공고일 현재 등재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등재 미혼으로 한정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	직계존속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
구분	기준	비고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	법정 배우자만 인정												
미혼자녀	만 30세 미만 만 30세 후	모집공고일 현재 등재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등재 미혼으로 한정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												
직계존속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	청약자의 세대주 자격 필수 (분리세대 시 청약자와 배우자 모두 세대주)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li> </ul>													

## 원주역 우미 린 더스카이 | 일반공급 배점표

## ■ 가점제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20
		1년 이상~2년 미만	4	10년 이상~11년 미만	22
		2년 이상~3년 미만	6	11년 이상~12년 미만	24
		3년 이상~4년 미만	8	12년 이상~13년 미만	26
		4년 이상~5년 미만	10	13년 이상~14년 미만	28
		5년 이상~6년 미만	12	14년 이상~15년 미만	30
		6년 이상~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9년 미만
			6개월 이상~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3	10년 이상~11년 미만
			2년 이상~3년 미만	4	11년 이상~12년 미만
			3년 이상~4년 미만	5	12년 이상~13년 미만
			4년 이상~5년 미만	6	13년 이상~14년 미만
			5년 이상~6년 미만	7	14년 이상~15년 미만
			6년 이상~7년 미만	8	15년 이상
			7년 이상~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2년 미만
			1년 미만	1	2년 이상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2년 미만	6개월 이상~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